

## 9월 · 월요일 · 10~12시' 산재 최다

작년 건설 재해자 2만998명 ...  
추락이 6,742명으로 1위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1년 중 9월에 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인 미만 현장에서 6개월 미만 경력의 50대 근로자가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설산재 재해자는 총 2만998명으로 2008년 2만835명보다 163명(0.78%)이 늘었다.

산재종류로는 부상질병자가 1만884명, 신체장해자 9,508명, 사망자 6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수 2,181명 가운데 27.8%로 가장 많았고, 사망만인율은 1.89로 전년 2.12보다 소폭 줄었다.

재해발생 시기별로는 월별로는 9월에 2,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2월 2,093명, 11월 2,086명 등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일어났고, 1주일 중에서는 월요일에 3,366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요일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시간별로는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5,61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뒤이어 점심시간과 오침을 지난 14~16시에 4,742명,

16~18시 3,6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형태별로는 추락이 6,742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전도 3,619명, 낙하비래 2,698명, 협착 1,995명, 충돌 1,943명, 절단 1,466명으로 1,000명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미만 사업장 사고자가 9,617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가장 안전이 취약한 현장으로 확인됐고, 재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7,5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자의 근로연수별로는 6개월 미만이 1만8,646명으로 전체의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고로 인한 총근로손실일수는 1,413만2,968일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기상이변 속출... 배수 펌프장 등 재난대비 시설 대폭 확충

정부, 미래의 극한기후 이변에  
따른 방재 대책 수립

**정**부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에 배수 펌프장을 확대하고 우수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반지하 주택의 피해를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거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수도권 폭우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중앙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기상 이변을 고려해 강우, 강풍 등 최악의 기상 예측치를 반영한 새로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하수시설 등 방재 시설 설치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의 기상관측 결과에 따라 확률빈도로 적용하고 있는 방재설계기준을 시간당 극한 강우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의 기상관측 결과만으로는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과거 기후 분석을 통한 확률 분석으로는 최근의 기후 현상에 대비할 수 없어 극한기상 예측치를 마련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확률 빈도에 따라 설계된 지금의 배수펌프장 등 재난대비시설의 용량 확대와 시설 확충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대본은 지역별로 극한기상 예측치가 조사되면 소관부처별로 기존 하수시설 7만2,000km와 도시형 배수펌프장 473곳의 설계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처리용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 유천지구 등 상습침수지역 90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배수펌프장 등의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

박 청장은 “하수관거 확장이나 추가 설치 등의 문제는 지자체별로 예산 순위를 정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설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나오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역내로 빗물이 유입돼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지하철 출입구를 전수 조사해 자동 우수유입 차단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폭우 때 반 지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반 지하 주거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반 지하 주거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대체주택 공급을 늘려 침수 위험이 큰 반 지하 주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축물 지하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실 우수유입 방지시설 설치를 늘리고, 주택법을 개정해 지반변전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택 침수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되고, 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100만원씩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지표

### ‘호민인덱스’ 개발... 5대 대기업 1차 협력사 100여곳 시범평가

**대** 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호민인덱스(가칭)’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9월 30일 대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 지침 ‘호민인덱스’를 발표하고 올해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호민인덱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호민관실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법적 강제와 자발적 상생협력의 중간지점에서 대중소기업 거래평가지침인 ‘호민인덱스’를 도입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간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이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개선방안들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관련된 방안들은 공정위가 담당할 부분이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호민인덱스’는 공정시스템, 공정계약, 공정가격의 3개 영역에 걸쳐서 40개 내외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

ISO26000의 공정운영(fair operating) 항목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현장의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구성된다.

주요 지표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6개월전 발주예측치, 3개월전 발주물량 등을 사전 예고하거나 협력업체와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대중소기업간 사업관련 최초 상담시에 비밀유지약정(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지 ◇원사업자의 청렴수준 등이 포함된다.

‘호민인덱스’의 개발·평가·확산은 기업호민관실과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연구

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호민관실은 공청회 이후 5개 대기업과 100여개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받아 호민인덱스를 적용한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해외플랜트 수주, 사상 첫 500억 달러 돌파

3분기까지 507억 달러 기록, 작년 121% 증가... 중동지역 전체 72% 차지

해외플랜트 신규 수주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600억 달러 수주 달성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해외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한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강화대책 확정하는 등 지원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올들어 3분기까지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50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의 229억 달러보다 121% 증가한 것이며, 작년 연간 실적(463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해외플랜트의 수주가 급속히 증가

#### ▼ 5억 달러 이상 주요 프로젝트

(단위 : 100만 달러)

업체	국가	프로젝트	금액
한국전력공사	UAE	UAE원전	18,600
두산중공업	사우디	사우디 라빅6 화력발전소	3,389
대우조선해양	프랑스	FPSO 1기	1,811
현대중공업	사우디	리야드 PP11 민자발전 프로젝트	1,581
삼성ENG	UAE	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PKG-4	1,496
두산중공업	사우디	라스 아주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1,460
현대중공업	미얀마	미얀마 SHWE 가스전 개발공사	1,398
현대건설	쿠웨이트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1,406
현대건설	리비아	트리폴리 1,400MW Power Station	1,360
삼성중공업	네덜란드	LNG FPSO 1기	1,175
현대중공업	노르웨이	FPSO 1기	1,102
대림산업	사우디	안부 Export Refinery 프로젝트 패키지	1,063
현대건설	UAE	보주르 3차 석유화학 플랜트	935
대림산업	쿠웨이트	알 아흐마디 가스공장	890
두산중공업	인도	석탄화력발전소	755
포스코건설	칠레	산타 마리아 석탄화력발전소	651
삼성물산	싱가포르	LNG Receiving Terminal Project	624
GS건설	UAE	송유관 프로젝트	620
대림산업	사우디	안부 Export Refinery 프로젝트	601
대우해양조선	독일	초대형 해양플랜트 설치선	570
삼성ENG	UAE	보르주 3차 석유화학 플랜트단지 확장	552
SK건설	사우디	안부 Export Refinery 프로젝트	546

한 것은 UAE 원전수주(186억 달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과 중남미 등 산유국의 에너지플랜트 투자자가 지속·확대된 점도 수주확대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경부는 “유로화 약세, 원화강세 등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발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의 72%인 366억 달러를 수주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작년 3분기까지 10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0억 달러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프랑스 토탈 FPSO(18억 달러), 삼성중공업의 쉘 LNG-FPSO(12억 달러) 수주가 컸다.

아시아지역에서는 44억 달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의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1억3,000만 달러), 이케크건설의 탕롱 시멘트 플랜트 확장 공사(2억60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오일·가스시설과 발전 부분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유럽지역과 함께 시장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프리카 28억 달러, 미주 16억 달러 등이다.

분야별로는 UAE 원전을 포함한 발전·담수 부문이 307억 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오일·가스 시설이 99억 달러, 해양과 석유화학

플랜트는 각각 65억 달러,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수주효과 극대화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달 중 플랜트기자재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과 수주사절단 파견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등을 통해 정보공유와 수주상담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을 60일→90일로  
연장**

**SOC민자시행자와 기업결합시  
신고의무 면제**

**| 불** 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간 연장과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쟁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있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한다. 관련자료 제출, 당사자 출석, 사실확인 등에 따른 시일이 촉박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그동안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기간제한 규정(60일)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은 사적 분쟁의 성격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 시정조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석면함유 건축물 작업  
근로자 준수사항 강화**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 석** 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 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해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장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자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작업장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칙상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석면분진 발생에 따른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일러, 수처리시설 인증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수처리시설 인증기준 세분화 및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 의무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지경부고시 제 2010-174호)의 급수처리 기준의 개정에 맞춰 '급수처리 등의 검사업무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일러 급수는 안전과 효율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적당한 관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스케일 형성을 방지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개정된 보일러 검사기준에는 수처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수처리 시설을 이온교환처리시설과 음향처리시설로 구분하도록 했으며 실시간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표시·저장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에 경보를 울리는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받지 않은 수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절차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일러 검사기준 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수처리시설 인증업무 운영내규' 중 수처리시설 인증절차, 인증받지 않은 설비 인정절차 등을 개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처리 시설 인증제품보급으로 보일러 안전 및 효율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온실가스감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도 매달 납부 가능

####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한 달씩 낼 수 있

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1년분을 한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별목업은 기존처럼 1년분 보험료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다.

또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총공사 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만 적용했던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40억~59억 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또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 근로자도 앞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고용이나 산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연간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흐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